

울산지방법원 2021. 7. 7 선고 2020가단11568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

담당변호사 김용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

변 론 종 결 2021. 6. 2.

판 결 선 고 2021. 7. 7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20. 6. 3. 접수 제4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9. 4. 28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(前) 소유자로부터 같은 날 증여받았음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6. 3.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.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다.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주장 및 판단

### 가. 주장

원고는 2008년경부터 소외 C와 동거하였으나 수시로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하다가 2020년 4월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D병원에서 진료받고 2020. 5. 4. 피고의 집으로 돌아갔다.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대주를 바꾸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적이 있을 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다.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날이 2020. 5. 26.인데 그 당시 원고가 지주막하 뇌출혈치료를 받고 퇴원한지 열흘도 안 되었을 때이다.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는데, 피고는 인감증명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. 6. 3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판단

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,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(前)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0다75648 판결,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0다75044, 75051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갑 제2, 3호증, 갑 제4호증의 1, 2,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, 피고가 원고의

인감도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증여계약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,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, 피고가 2021. 2. 10.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.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**3. 결론**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석

## 별 지 목 록

1. 경북 청송군  대 734㎡
2. 경북 청송군  전 284㎡
3. 경북 청송군  전 3,607㎡

- 이 상 -

